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

[시행 2015.9.22] [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54호, 2015.9.22, 일부개정]

미래창조과학부(연구환경안전팀) 02 - 2110 - 278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고경위 및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고조사반 구성) ①사고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.

1.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
2.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기계안전기술사 · 화공안전기술사 · 전기안전기술사 · 산업위생관리기술사 · 소방기술사 · 가스기술사 또는 인간공학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
3. 연구주체의 장이 추천하는 안전분야 전문가
4.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

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반원으로 구성된 사고조사반 인력풀을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조사반원을 위촉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서식의 위촉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된 조사반원에 대해서는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고조사반원증을 발급한다.

제3조(안전사고의 조사)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원인, 규모 및 발생지역 등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조사반원 중 5명 내외로 당해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반을 구성한다.

②제1항에 따라 당해 사고조사반이 구성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당해 사고조사반원 중에서 책임자(이하 "조사반장" 이라 한다)를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

③제2항에 따라 조사반장이 지명 또는 위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반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
제4조(사고조사반의 기능) 사고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이행여부 등 사고원인 및 사고경위 조사
2. 연구실 사용제한 등 긴급한 조치 필요여부 등의 검토
3.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조사를 요청한 사항

제5조(조사실시) ①사고조사반은 발생한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고조사반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②조사반장은 사고조사가 효율적이고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당해 조사반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조사업무를 총괄한다.

③조사반장은 현장 도착후 즉시 사고 원인 및 피해내용, 연구실 사용제한 등 긴급한 조치의 필요여부 등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우선 유·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고서의 제출) 조사반장은 사고조사가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조사 일시
2. 당해 사고조사반 구성
3. 사고개요
4. 조사내용 및 결과(사고현장 사진 포함)
5. 문제점
6. 복구시 반영 필요사항 등 개선대책
7. 결론 및 건의사항

제7조(여비 및 수당등) ① 공무원 이외의 조사반원에 대한 여비는『공무원여비규정』별표1의 제2호에 준하여 지급한다.

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조사반원에 대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조사차량 및 조사장비 임차비, 비디오 및 사진촬영,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정보제공) 조사반원은 사고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9조(재검토기한)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154호,2015.9.22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